

의안번호	제81호
의결 연월일	2014년 월 일 (제336회)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이광희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4년 11월 11일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11. 11.

발 의 자 : 이광희, 김양희, 이숙애
이종욱, 정영수, 윤홍창
장선배.

1. 제정이유

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태극기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(안 제 1조 및 제2조)
- 경술국치일(8월 29일)에 조기게양을 명시함(안 제3조)
- 국기의 선양과 국기 보급사항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 (안 제4조~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4. 10. 02. ~ 2014. 10. 21.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6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대한민국국기법
 - 2)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

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에서 위임된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국기선양”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국기의 게양일) ①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2. 충청도민 체육대회 기간
3. 경술국치일(8월 29일 조기게양)
4. 그 밖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제4조(국기의 선양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기 보급사업 등) ① 도지사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 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

업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
5.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단체 등의 지원)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체

□ 대한민국국기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·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
2. 「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
3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대한민국의 국기) 대한민국의 국기(이하 "국기"라 한다)는 태극기(太極旗)로 한다.

제5조(국기의 존엄성 등)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·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조(국기에 대한 경례)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.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국기의 깃면, 깃봉, 깃대 등) ①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(太極)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(卦)로 구성한다.

②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,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

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, 패는 검은색으로 한다.

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. 다만,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,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.

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, 그 색은 흰색·은백색·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.

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, 국기의 표준색도,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5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·24시간 게양할 수 있다.

③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.

1. 공항·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
2. 대형건물·공원·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
3.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
4.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
5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

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.

⑤국기가 심한 눈·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

양하지 아니한다.

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,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국기의 게양방법 등)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.

1. 경축일 또는 평일 :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
2. 현충일·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: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(弔旗)를 게양함

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,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, 국기의 게양위치, 게양식·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국기의 관리 등) ①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·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(手旗)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

④국기를 영구(靈柩)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) ① 국기 또는 국기문양(태극과 4괘)은 각종 물품과 의식(儀式) 등에 활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
2.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

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

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2조(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)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 <법률 제8272호, 2007.1.26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 추계서

1. 비용추계내용

○ 재정수반요인

- 충청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제9조,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예산 추계

2. 비용추계

- 충청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면 71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.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	국기 보급사업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국기 보급사업	142백만원	142백만원	142백만원	142백만원	142백만원	710백만원
	소계(b)						
□ 총 비용(a-b)		142백만원	142백만원	142백만원	142백만원	142백만원	710백만원

- ※ ① 상기 예산 추계액은 도비, 시·군비를 합한 금액을 추계한 것이며,
 ② 제9조(다중이용시설 국기게양), 제12조(교육 및 홍보), 제13조(국기선양 단체의 지원)에 따른 예산 추계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제11조(국기 보급사업)에 대해서만 비용추계 하였음.

3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기초자료

- 기초생활수급자(일반수급자) : 27,203가구
- 등록 장애인수 : 93,563명
- 국가유공자 : 21,403명

○ 소요예산

- 142,169개 × 5,000원(가정용 태극기) = 710,845천원
- ※ 재원비율 : 도비 50%, 시군비 50%

4. 작성자 : 총무과 행정5급 이규상(220-2513)